

2019년도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2019. 8.

감사위원회

보 고 순 서

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2.	2018년 제1차 건설하도급분야감사결과	
3.	서울시립대학교 기관운영 감사결과	
4.	『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시설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5.	민간위탁시설(청소년시설)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6.	서울특별시청년허브 특정감사결과	
7.	도로포장 및 시설물 안전감사	
8.	사면정비 및 조경분야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9.	2018년 제2차 건설하도급분야 감사결과	
10.	2019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결과보고	

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p.1)

□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목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실시함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 감사기간 : 2017. 12. 4. ~ 12. 27.(기간 중 15일간)
- 감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5년 이후 준공 또는 진행 중인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

□ 감사중점

- 건축물 등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지진보호 장치 설치의 적정 여부
- 일괄입찰 등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 겨울철에 취약한 굴착·콘크리트·가시설 등 공사의 안전시공 여부
- 공사장의 교통사고 및 화재예방과 가스 등 위험물의 관리실태
- 품질검사 등 품질관리의 적정성과 정밀시공 여부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9	5	956,402	-	1	13	2	3	8	1		1	3	-
				(1)	(956,402)	(48,798)	(907,604)	(4)	(0)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19. 1월 기준)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	보행데크와 ○○○ ○○ 건축물 내진 등 구조 검토 추가 필요	시정 요구 통보	-지진에 대한 구조검토의 필요성 검토 후 중장기 대책수립 -보행데크는 적설, 풍하중 등에 대한 구조검토 실시 -구조평면도 등 관계서류에 관계 기술자 확인, 서명·날인 조치	-○○○○○ 건물 정밀점검 시 (19.7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 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민 공공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임 -적설하중 50kg보다 큰 활 하중 300kg 적용으로 안전성 확보(완료) -구조평면도, 구조설계도에 책임기 술자 확인, 서명·날인 조치(완료)	완료 (일부잔행)
2	○○○○○ 내진구조 시공 및 정산 부적정	시정 요구 통보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내력상 안전성 미검토 -케미컬앵커볼트 부족시공분 42,619천원 회수조치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에 관계기 술자 서명, 날인 조치 -용역업자 및 건설업자, 기술자 벌점 부과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서 제출(18.12.21.) -공사대금 42,619천원 환수 완료(19.1.9.) -건축구조 변경 설계도면 및 준공도명 책임구조기술자 서 명·날인 완료(18.12.21.) -벌점부과 진행중(19.3월 현재)	완료 (일부잔행)
3	소방시설 내진 설계 반영 및 내진능력 공개 필요	권고 시정 요구	-현재 진행중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내진설계 반영 검토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않은 4건 공사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기재 하여 공개조치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적용 가능한 내진설비 적용조치 -건축물대장에 내진능력 기재하여 공개조치 완료(18.8.21.)	완료
4	일괄입찰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계측 관리비용 부당 증액	시정 요구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계측관리 비용 756,056천원 감액조치	-계측관리비용 감액조치 완료 (총무부-4602, 18.10.11.)	완료
5	토공사의 사토 처리방법 설계 변경 미조치	시정 요구	-토공사 사토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122,390천원 감액 조치	-하남선1-2공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 완료(17.12.20) -하남선1-1공구 18년 하반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행	완료
6	크레인 운영방법 관련 설계변경 및 정산 부적정	시정 요구	-크레인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29,546천원 감액 조치	-공사비 29,546천원 감액 및 기 집행한 공사비 6,179천원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과다 집행한 금액 6,179천원 감액 등 회수조치	회수 완료 (건축부-17450, '18.12.5.)	
7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 운반방법 설계 변경 부적정	주의 요구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운반 장비를 24톤 덤프트럭으로 적용 하여 설계금액이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조치	-설계용역사에 과잉 설계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총무부-4602, '18.10.11.)	완료
8	공원내 지하 건 축물 소방시설 설 계·시공 부적정	시정 요구	-소방시설기준에 따라 관할 소방서 와 협의 및 적정한 소방시설 설치	-관할 소방서 협의 및 소방시설 설치완료 (공원조성과-6820, '18.6.26.)	완료
9	건설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방법 방침 개정 필요	통보 통보	-현행 관련법령 등에 부합되게 예비준공검사, 대상공사, 수행 방법 등 방침내용 재정비 조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 공사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예비 준공검사 실시 조치	-예비준공검사 시행방법 개선 방침 수립 등 조치완료 (기술심사담당관-10127, '18.6.29.)	완료

□ 현지조치사항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따른 공사비 산정 부적정	현지 시정	-과다산출된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원가 8,778천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	-조치완료(8,778천원 감액)	완료
2	건축공사 가설 기자재 미인증품 반출조치	현지 시정	-현장 반입된 안전인증 미포시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전량(파 이프서포트 850개, 단관파이프 3,700개) 반출조치 및 공사관 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완료

2. 2018년 제1차 건설하도급분야 감사결과 (p.49)

감사배경 및 목적

- 건설 공사장의 하도급 감사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업체간상생 협력, 사회적 약자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

추진내용

- 감사대상 : 3개 기관(8개소 건설공사장)

발 주 처	담 당 부 서	대 상 공 사 장
서울주택도시공사	가, 나부서	서울 ○○○도시개발사업지구 ○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한강사업본부	다부서	△△△ △△△ 신설공사
	라부서	◇◇◇◇ ◇◇◇ 증설공사(◇◇)
		◇◇◇◇ ◇◇◇ 개선공사(◆◆◆◆◆◆◆◆)
		◇◇◇◇ ◇◇◇ 신설공사(☆☆☆ ☆☆)
마부서	◇◇◇◇ ◇◇◇ 증설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바부서	□□□ □□□□ □□□ 조성공사
		○○○○○○○○ ○○○○ 및 ○○ 현대화 사업

- 감사기간 : 2018. 4. 24. ~ 5. 29.(19일간)
- 감사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외 6명
- 감사범위 : 건설하도급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중점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및 하도급 분야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
- 건설기계 임대차 및 건설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여부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 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회수)	감 액	기 타						
39	9	0	0 (0)	0 (0)	0 (0)	0 (0)	0 (0)	12 (9)	0	0	27	0 (0)	0 (0)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19.3.30.현재)

연번	공사현장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서울 ○○○도시 개발사업지구 ○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주의 조치완료	조치완료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금보증서 미교부	통보 주의요구	○ 하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조치완료
3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하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의조치	조치완료
4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하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의조치	조치완료
5		건설근로자 노무비 직접지급 미확인	주의요구	○ 공사관리관 신분상 조치	조치완료
6	◇◇◇◇ ◇◇◇◇ 개선공사 (◆◆,◆◆◆◆)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자격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고발, 행정처분등 조치중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별점부과 조치중	조치중
7	◇◇◇◇ ◇◇◇◇ 신설공사 (☆☆☆ ☆☆☆)	하수급인 품질관리 검토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별점부과 조치중	조치중
8	◇◇◇◇ ◇◇◇◇ 개선공사 (◆◆,◆◆◆◆)	하도급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주의 조치완료	조치완료
9	□□□ □□ □□ □□□ 조성공사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미신고	통보 주의요구	○ 수급인 과태료 부과조치	조치완료
10	◇◇◇◇ ◇◇◇◇ 증설공사(◇◇◇), ◇◇◇◇ ◇◇◇◇ 신설공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하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의조치	조치완료
11	○ ○ ○ ○ ○ ○ ○ ○ ○ ○ ○ 및 ○ ○ 현대 화 사업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자격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수급인 및 하수급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공사감독자 별점부과 조치	조치완료
12		하도급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주의 조치중 ○ 하수급인 파산선고('18.4.27.)로 종결처리	일부 조치완료
13		부당한 공상처리	통보	○ 관할 행정기관에 수사의뢰 통보	조치완료

3. 서울시립대학교 기관운영 감사결과 (p. 89)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인사·조직·회계 및 학사운영·시설관리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 감사기간 : 2018. 7. 2 ~ 7. 25.(18일간)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7명
- 감사범위 : 2015. 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

감사중점

- 조직·인사관리 및 채용업무 적정 여부
- 예산, 수입·지출 등 회계분야 처리 적정 여부
- 전임교원 강의 책임시간 준수 적정 여부
- 학사 관리·운영 적정 여부
-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운영 적정 여부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정 (환수)	감액	기타					
29	4	4,202	0 (0)	0 (0)	7 (4,202)	3 (4,202)	0 (0)	4 (0)	11 (4)	0	0	11	0 (0)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19. 4월 기준)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	직급보조비 지급기준 부적정	시정 요구 (기관 경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위반하지 않도록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을 개정 시행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 질의요청 (총무과-1892, '19.1.29.)	진행중
2	연구년교수 연구실적 관리 및 선정업무 부적정	통보 주의 요구 통보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에 따라 연구년교수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업무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활동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제재 등 개선방안 마련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수에게 연구비 반납 고지 및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등의 절차 이행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제출 및 연구비 반납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실적물 관리시스템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년교수 선정(인사위원회 심의) 기준 개선 :직전 연구년 종료 이후의 기간 산출 시 활동보고서 지연제출기간 제외 (교무과-3523, '19.2.26.) -해당 교원(1인)에게 연구비 반납 고지 후 전액 반납 완료 (연구지원과-784, '19.2.8.) -교내 전산정보과에 연구년 교수 연구비 신청 및 연구실적물 제출·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청함 (연구지원과-914, '19.2.15.)	완료 완료 진행중
3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 부적정	주의 요구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전환 시 규정에 따라 전환 업무 철저히 할 것	-향후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전환 시 규정에 따라 전환하도록 하겠음	완료
4	입학사정관 인 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요구	-2015년~2018년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회수(총 3백만 원)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전액 반납 ('19.2.19.~'19.4.18.)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5	전임교원 초과 강의료 지급 개선 필요	통보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을 높이기 위해 초과강의료 지급 대상의 확대보다는 전임교원의 보직 및 보직자 수 또는 연구년 교수 비율 조정 등의 실질적 방안을 강구	-연구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년 교수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개정('19.2.27.)	완료
6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관리 부적 정	통보	-교직원 외부강의등 지연 신고에 대하여 교원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강구	-외부강의 지연신고자에 대한 본교 교원윤리강령과 교원윤리규정 위반 관련 진상 조사 추진(교무과-3259,'19.2.22.) ※ 교원윤리위원회: '19.4.26. 14:00 개최	완료
		주의 요구	-서울시립대학교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처리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자체교육 실시 (교무과-3573,'19.2.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외부강의 신고 및 처리, 공무국의 여행 허가 등	완료
		주의 요구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등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고 겸직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	-2019학년도부터 전임교원이 타교출강(1월을 초과)하는 경우 겸직허가 승인 후 실시하도록 “전임교원 강의 책임시간 및 강사료지급 규정” 개정 (교무과-3624,'19.2.27.)	완료
통보 (기관 경고)	-전임교원의 겸직업무 수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장, 연가 등 복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	-겸직업무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해 전산정보과에 대학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신청 (교무과-3454,'19.2.26.)	진행중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7	교원 공무국외 여행 업무처리 등 부적정	주의 요구	-교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련 사전 승인, 귀국보고서 제출 여부 및 지연 기간의 누적일수 관리 등 공무국외여행허가 업무에 대해 교원 및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자체교육실시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지침 :대학행정 국외여행 관리 시스템 (교무과-3573,'19.2.25.)	완료
		시정 요구	-2018.11.23.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 개정으로 삭제한 ‘귀국보고서 지연기간 누적일수 기간만큼 공무국외여행 불가’ 규정에 대해 재개정하여 교원의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지연기간에 따른 제재 규정을 마련 시행	-귀국보고서 지연기간 누적일수 기간만큼 공무국외여행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 개정 (교무과-17652,'18.11.26.)	완료
		통보	-불가피한 사후 승인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차례 상습적인 공무국외여행 신청 지연제출자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 마련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 개정 :여행계획지연, 초청장 지연 도착 등 지연제출사유가 타당할 경우만 지연횟수에서 제외하되, 연간 3회 초과 국외여행 신청 지연 시 주의, 경고	완료
		시정 요구	-과다 지급된 교직원 공무국외여행 여비(834,900원) 회수	-공무국외여행 국외여비 과오납 세입 조치(전액 반납) (’18.7.27.~’19.2.9.)	완료
		주의 요구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비 사용·집행 업무 철저히 관리감독	-향후 연구비 사용·집행 업무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음	완료
		통보 (기관 경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등록 관리하는 방안 및 「공무원여비 업무처리기준」과 같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범위는 비용의 지급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모든 공무여행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에 대학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완료 (’19.4.18.)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8	재단법인 서울 시립대학교 발 전기금 운영 정 상화 방안 마련 필요	시정 요구 통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립대학 교 교수의 재단법인 서울시립 대학교 발전기금 결직 허가 -중장기적으로 발전기금이 서울 시립대학교 직원(서울시 공무 원, 서울시립대학교 직원 등) 에게 의존하여 운영되지 않도 록 효율적인 개선방안 강구	-결직허가 득 완료 (’18.12.18.~’19.1.30.) -모금실행·지원 담당 재단 직원 신규채용(’18.6.21.) 및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 검토	완료 진행중
9	특근매식비 집 행내역 관리 부적정	통보	-특근매식비를 실제 특근을 한 교수들이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원복무부서(교무과) 조치 방안 마련 협조요청 공문 발송 (총무과-2769, ’19.2.13.)	진행중
10	근무지외 출장 자 식비 중복 지급 부적정	시정 요구	-’18년 관외여비 출장여비 (368,210원) 회수	-관외 출장여비 전액 회수 (’19.1.24.~2.12.)	완료
11	실험실 안전 및 실험실 시 약 등 관리 업 무 부적정	주의 요구 통보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실험실 내 유해화학 물질과 시약 등을 철저히 관리 -연구실 공간부족으로 복도에 보관하고 있는 실험실습 기자 재, 시약장, 가스통 등에 대해 도난, 분실방지 및 화재 시 피 난로 확보 등 연구실 안전관리 를 위한 단계별(단기·중·장기계 획) 안전관리 대책 마련 시행	-시약관리를 위한 “2019년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행 (시설과-201호, 2019.1.7.)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 한 “2019년 실험실습실 안 전환경관리 추진계획” (총장방침-946호, 2018.12.27.)	완료 완료
12	연구 및 실험 실습기자재 등 물품관리 업무 부적정	주의 요구 통보	-연구과제 종료 후 기자재가 방 치되지 않도록 실험실습기자재 활용률 전수조사·활용실적 관 리 및 연 1회 이상 기자재 활 용상태 주기적 점검·평가 -저활용·유휴장비 등에 대한 활 용도 증대 방안 마련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공 동을 위한 기자재 관리 방안 마련	-연구과제 관련 실험실습기 자재 활용률 전수조사(사후 관리 평가) 실시예정 및 실 험실습기자재위원회 규정 준수하여 매년 기자재 점검 (연구처장 방침12호, 2019.2.28.) -저활용·유휴 연구장비 파악 하여 필요 학과 이관 또는 수업용기자재로 변경 조치, 공동활용을 위한 기자재는 교내 공동활용 시스템 사용 또는 ZEUS 시스템 등록 예정 (연구처장 방침12호, 2019.2.28.)	진행중 진행중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3	공동기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 요	통보	-공동기기센터 운영 활성화 방 안 마련	-교내·외 홍보 강화 :센터 홍보자료 게시, 기기 분석료 조정, 2019년 공동 기기센터 운영계획에 정책 반영, 신규기기입고설명회, 워크샵, 직접사용자제도 등 (18.12.7.~19.2.28.) -기기분석 품질 제고 :행정인턴 채용(18.8.28.), 담당자의 분석교육 지속적 이수(18.10.16.~19.1.23.) -교내활용도 높은 분석기기 확충 :교내 분석기기 수요 설문 조사 (연구지원과-4621호,18.8.20.)	완료
14	교원 비위사건 처리 부적정	주의 요구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공무원 비위사건과 관련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 준수하여 업무 를 처리하고, 교원의 엄정한 공직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업무 철저	-자체교육 실시(교무과-3573,19.2.25.)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 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운 리규정, 서울시립대학교 교 원윤리위원회 규정, 교육공 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완료
15	미신고 건축물 부적정	가설 구축 시정 요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공 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 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운 영 업무 철저	-가설건축물 4건에 대해 동 대문구청 건축과에 건축협 의 신청 후 처리 완료 (재활용센터 내 압물보관소, 토 목공학과 토목구조실험참고, 건 축구조 실험동, 특정항원 실험동 물실 4건, 19.1.24.) -복지회 소관 가설건축물 철 거 완료(18.11.2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완료 (18.11.26.), 공유재산 관 리시스템 등재(취득신고) 완료(19.3.8.)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6	서울시립대학교 복지회 식품영업 미신고 등 부적정	주의	-앞으로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집단급식소의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히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에 총 7곳 영업신고 완료 ('18.8.13~14)	완료
17	강촌청소년수련원 운영 부적정	주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단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 「고용보험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	-향후 강촌청소년수련원 운영 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완료

4. 『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시설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p.204)

감사배경 및 목적

- 노원 및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시설안전과 사고예방 및 유지관리 실태 관련 안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 기여

감사개요

- 대상기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재무국(계약심사과)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 감사기간: 2018. 10. 22. ~ 11. 20.(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안전감사4팀장 등 5명
- 감사대상: 2015년 ~ 2018. 10월까지 추진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 5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물품구매, 1천만 원 이상 용역
 - 자원회수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중점

- 안전관리 분야
 -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 수행 적정 여부
 - 구조·내진 등 구조물 안전 확보 적정성 등
-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분야
 -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생활폐기물 연소가스 처리 적정여부
- 공사, 용역, 물품 분야
 - 공사(용역)의 설계·계약심사·계약·사업관리 적정 여부
 - 물품구매·관리 적정성 등

○ 민간위탁시설 운영관리 분야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 재위탁 및 재계약 과정에서 원가계산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 지적(처분) 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재시공	기타					
33	4	21,600	- (-)	- (-)	6 (21,600)	- (-)	1 (21,600)	- (-)	5 (-)	9 (4)	-	-	18 (7)	- (-)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유형	조치현황	비고
1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 안전관리자의 직무소홀	통보 3	직무를 소홀히 한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신분상 조치하고, 절연성능이 불량한 지지야자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2019.4.28 조치 예정	조치완료 2 조치예정 1
2	암모니아수 배출관에 용도를 알 수 없는 분기관 설치로 약품 누출 우려	시정요구 1	용도를 알 수 없는 분기관은 철거하고 세안설비에는 가압 펌프 설치	조치완료 1
3	내진성능 평가시 붕괴위험 부재 보강대책 검토 미이행	통보 1	내진성능 평가서 수정보고서 제출	조치완료 1
4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소홀,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 운영 소홀	시정요구3 통보3	휴대용pH측정기 구매완료 수질자동측정기 보수, 약품탱크 철거 및 폐수처리제어실 정비, 방류구 pH 측정기 설치, 중앙제어실에서 방류수 수질 감시는 대정비 기간(2019.9.25. ~11.28.) 중 조치 예정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기록, 킬레이트반응조 운영 조치 완료	조치예정 3 조치완료 3
5	자원회수시설 SCR 촉매탑 촉매성능 판단기준 부적정	통보 1	환경부에 촉매활성도 검사기준을 마련토록 건의 조치완료 기술진단을 위한 개선방수립용역 시행	조치완료 1
6	폐기물 투입호퍼 허부슈트 및 라이닝 교체공사 원가 계산 부적정	통보 1 주의요구 1	동일한 사무 재위탁시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 및 잘못된 품셈 적용으로 예산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조치예정 1 조치완료 1
7	유인송풍기 상허부 케이싱 교체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으로 예산낭비	통보 1	동일한 사무 재위탁시 감사결과를 심사자료 활용 및 업무소홀로 예산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조치예정 1 (일부완료)
8	관리동 냉·온수 배관 교체공사 원가 과다적용으로 예산낭비	통보 1 주의요구 1	동일한 사무 재위탁시 감사결과를 심사자료 활용 잘못된 품셈 적용으로 예산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조치예정 1 조치완료 1
9	비산재 수집·운반 용역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부가가치세) 낭비	주의요구 1	2019년도 비산재 수집용역에서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 가치세 제외 및 설계업무 담당자 교육	조치완료 1

10	가설(비계) 공사 수량 과다 산출로 예산낭비	주의요구 1 통보 1	동일한 사무 재위탁시 감사결과를 심사자료 활용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방안 강구 및 설계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조치예정 1 조치완료 1
11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소홀로 예산낭비	통보 3	동일한 사무 재위탁시 감사결과를 심사자료 활용 및 2018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에서 과다계상된 고속도로 통행료 2,960천 원 감액, 예산을 낭비한 업무담당자 신분상 조치	조치예정 1 조치완료 2
12	강남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소홀로 예산낭비	통보 2	동일한 사무 재위탁시 감사결과를 심사자료 활용 및 2018년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에서 노선변경으로 과다계상된 15,600천 원 감액	조치예정 1 조치완료 1
13	계약심사 부적정으로 수탁자의 예산낭비 초래	주의요구 2	계약심사업무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업무담당자 교육하고, 완료된 계약심사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담당자 교육	조치완료 2
14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부적정	주의요구 1 통보 1	입찰 및 계약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 및 환경설비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업무담당자 신분상 조치	조치완료 2
15	비산재 톤백의 물품검사 소홀	주의요구 1	비산재 톤백 등 물품납품 시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	조치완료 1
16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 부적정	통보 1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 정비완료	조치완료 1
17	민간위탁비 원가계산 과다 산출로 예산낭비	주의요구 1 시정요구 1	민간위탁비 원가계산시 환경부 운영비산출지침 준수 과다산출된 민간위탁비용 21,600천 원에 대하여, 2017.4~2019.2 기간에 대하여는 2019.3월분 민간 위탁금 청구시 일괄 감액하고, 2019.3~2020.3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민간위탁금 청구금액에서 감액예정	조치완료 1 조치예정 1

감사결과 처분요구

연 번	지적내용
1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소홀
2	암모니아수 배출관에 용도를 알수 없는 분기관 설치로 약품 누출 우려
3	내진성능 평가시 붕괴위험 부재 보강대책 검토 미이행
4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소홀, 다이옥신 시료 채취장치 유지관리 소홀
5	자원회수시설 SCR 촉매탑 촉매성능 판단기준 부적정
6	폐기물 투입호퍼 허부슈트 및 라이닝 교체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7	유인송풍기 상·하부 케이싱 교체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으로 예산낭비
8	관리동 냉·온수 배관 교체공사 원가 과다적용으로 예산낭비
9	비산재 수집·운반 용역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부가가치세) 낭비
10	가설(비계) 공사 수량 과다산출로 예산낭비
11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소홀로 예산낭비
12	강남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소홀로 예산낭비
13	계약심사 부적정으로 수탁자의 예산낭비 초래
14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부적정
15	비산재 탄백의 물품검사 소홀
16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 부적정
17	민간위탁비 원가계산 과다산출로 예산낭비

5. 민간위탁시설(청소년시설)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p.286)

감사목적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시립 청소년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시정·개선하여, 청소년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추진 내용

- 감사대상 : 청소년정책과(市),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 감사기간 : '18. 6. 18. ~ 7. 27.(예비감사 기관별 5일)
- 감사범위 : '15. 1. 1. 부터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업무
- 감사인원 : 경영감사2팀장 등 7명(공익감사단 2명 포함)

감사중점사항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이행 및 인력 관리·운영 적정성
- 예산·회계·계약 업무 처리 적정 여부
- 시설물 보강 및 시설물 관리 적정 여부
- 위탁 협약사항 이행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적정 여부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기관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총 계	59	5	-	-	-	3	35(5)	-	-	21	-
상담복지센터	12	1				-	9(1)			3	
직업체험센터	10	3				-	9(3)			1	
드림센터	15	1				2	9(1)			4	
청소년정책과	22	-				1	8			13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2019. 4. 30. 기준)

연번	관련기관	처분요구 내역	처분종류	조치현황	비고
1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자생, 삶의 기반(살림집)」 사업추진 부진 등	주의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완료
	청소년정책과		시정	- 협약서 재산목록에 가설건축물 추가등재 관리	완료
2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완료
3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운영규정 정비 및 인력 운영 부적정	시정, 통보	- 직제규정 6개팀 명칭 변경 완료 - 정규직원 충원 및 공석인 부장·활동자립팀장 채용 완료 - 센터팀장 2급→3급으로 조정	완료
	청소년정책과		주의, 통보	- 정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	진행
4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 인사위원회 구성 시 관련규정에 따라 외부위원 구성 - 관련 직원 인사관리 매뉴얼 교육 실시 완료	완료
	서울시청소년상 담복지센터		주의	- 운영규정 시정 승인 요청 하였으며 추후 시와 논의 예정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음 - 인사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진행
5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직원 채용 및 승진 절차 부적정	주의	- 센터 인사관리규정 개정 - 채용심사 서류전형 심사표 신설 및 채용공고 계획에 맞게 선발	완료
	청소년정책과		통보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및 시립청소년직업 체험센터 인사규정 정비 예정	진행
6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시설운영규정 개정절차 미준수	주의	- 청소년시설 운영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완료	완료
				- 연봉제 규정 개정 준비 중	진행
7	서울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서 위탁조건(법인부 담 직원전문교육 실시) 미준수	주의	- 직원교육 실시 예정	진행

8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 관리 소홀	통보	-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이 일치하도록 변경 완료	완료
9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상담료 사전 승인절차 미준수	주의	- 담당직원 예산 관련 교육 완료 - 2019년 예산승인요청 시 이용료 승인 요청	완료
10	서울시립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예산운용 부적정	주의	- 18년 일반사업비 내에 편성된 인건비 전용 없음 - CYS-Net 예산 등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예산변경 시장 보고 및 승인 후 집행 - 18년 홍보물 제작 관련 전용 없음	완료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주의	- 예산편성과 집행처리에 있어 재원별 계획에 맞게 운영	완료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주의	- 담당직원 예산관련 교육 완료	완료
	청소년정책과		주의	- 예산 관련 교육 실시 예정('19.5월) -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정산완료 - '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시 관련 조례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검토.승인함	진행 완료 완료
11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수입금 및 사업비 반환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협약서 변경 중	진행
	청소년정책과		주의	- '18년 사업비 정산 및 '19년 사업예산 승인시 반영	완료
12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2017년 청정한 원탁토론회 지출 업무 부적정	주의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 담당자 교육 실시 완료	완료
13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쉽터종사자 재직수당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서울시 지침(예산 편성 시 쉽터 재직수당 미편성)	완료
	청소년정책과		주의, 통보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 토록 안내 및 교육지도 - '19년 드림센터·쉽터 사업 및 예산 승인 시 반영	완료
14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인건비 예산편성 및 연봉계약 운영 부적정	주의	- 2019년 총인건비 산정 시 개인별 경력 재산정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미포함 - 연봉제 운영규정 개정 준비 중	완료 진행
	청소년정책과		주의, 통보	- '19년도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 마련 시행	완료
15	서울시립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 2019년 직원전체교육 예산 미편성 - 직원창의력향상워크숍은 2017년도부터 목적사업 비에 편성하지 않고 정월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 행 - 예산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완료
	청소년정책과		통보	- 예산편성 기준 수정·보완 예정('19년 하반기)	진행

16	서울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퇴직급여부담금 예산 편성 및 적립 부적정	통보	- 19.12.31. 기준 퇴직적립금 추계액을 반영하여 19 년도 퇴직급여적립금 예산 편성 - 퇴직급여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완료
17	서울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처우개선 수당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2019년도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에 의 거하여 종사자처우개선수당 19년 인건비 예산에 미편성	완료
	청소년정책과		주의, 통보	- '19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편성에 '종사자처 우 개선수당' 제외	완료
18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법인전입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주의	- 담당직원 예산 회계교육 실시 완료	완료
19	서울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자유공간 조성 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	주의	- 담당직원 교육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완료
20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시설 대관료 감면 부적정	주의	- 조례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19년 시설이용료 책정	완료
	청소년정책과		통보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시설 이용료 포함)	완료
21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소프트웨어 및 물품관리 소홀	시정	- 미등재 비품들에 대해서 자산관리대장에 등재 완료 - 소모품 대장 작성 비치하여 기록 관리 - 담당 직원 교육 실시 완료	완료
22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부적정	주의, 통보	-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추진 - 담당자 교육 실시 완료	완료
23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작업장학교 해외 현장학습 업무 부적정	주의	- 작업장학교 사업 2017.12.31. 종료 - 해외 출장 관련 교육 완료	완료
24	서울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 운영 부적정	주의, 통보	- 2019년부터 해당사업 폐지	완료
25	청소년정책과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부적정	통보	- 동북지역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 계획 - 퇴소 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하여 특성 화된 자립지원관 개소 추진 및 시범사업실시	완료
26	서울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일시보호소 운영 부적정	주의	- 19년 3월부터 19세 미만 청소년 우선 입소, 20세 이상 청소년 일시쉼터 연계 검토 후 입소 여부 결정하도록 운영 - 관련 내용 담당자 교육	완료
	청소년정책과		통보	- 일시보호소 운영 관련 교육 및 관련 전문가 회의 를 통하여 일시보호소 반복 입소자 대책 수립 예 정('19.5월)	진행

27	서울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CYS-Net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 '19년부터 CYS-Net 운영위원회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에서 운영	완료
	청소년정책과		통보	- CYS-Net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운영방침 수립 예정 ('19.5월)	진행
28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국외출장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 국외 출장 관련 내용 담당자 교육 실시	완료
29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프로그램 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부적정	주의	-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직원 및 강사 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및 관련 직원 교육 실시 완료	완료
30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통보	- 향후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참여 가능토록 선발 - 외부 선발심사위원 위촉 완료 - 담당직원 교육 완료	완료
31	서울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 외부강의 허가제 운영 부적정	통보	- 외부출수강시 외부출수강신청서에 의하여 센터장 허가 후 출수강하도록 조치 및 전자문서에 관련 양식 탑재 - 관련 담당자 및 직원 교육	완료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통보	- 외부강의 등 요청이 있을 시 '외부강의 신청서'로 사전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교육	완료
	청소년정책과		통보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규 정 포함 예정('19. 5월)	진행
			통보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에서 외부강의에 대 한 규정 포함 정비 예정	진행

6. 서울특별시청년허브 특정감사 결과 (p.405)

감사목적 및 필요성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청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감사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및 제3조
- 「2018년도 감사 기본계획」 (감사담당관-874호, '18. 1.16.)

감사구분 : 특정감사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청년허브, 市 청년청

중점 감사사항

- 주요 사업 추진실태 확인 및 사업성과 분석
- 보조금 집행(예산, 회계, 계약, 급여 등) 적정 여부
-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 및 수탁기관 관리(지도, 감독, 평가 등) 적정 여부
- 청년공간 지원(운영, 입주 및 활성화, 교육, 시설관리 등) 적정 여부 등

감사범위 : '15. 1. 1.부터 추진한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

감사기간 : '18. 9. 6.(목)~10.12.(금) 기간 중 17일

※ 예비감사 : 감사기간 중 10일('18. 9. 6. ~ 9.19.)

감사인원 : 경영감사2팀장 등 5명(전문가 1명 포함)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천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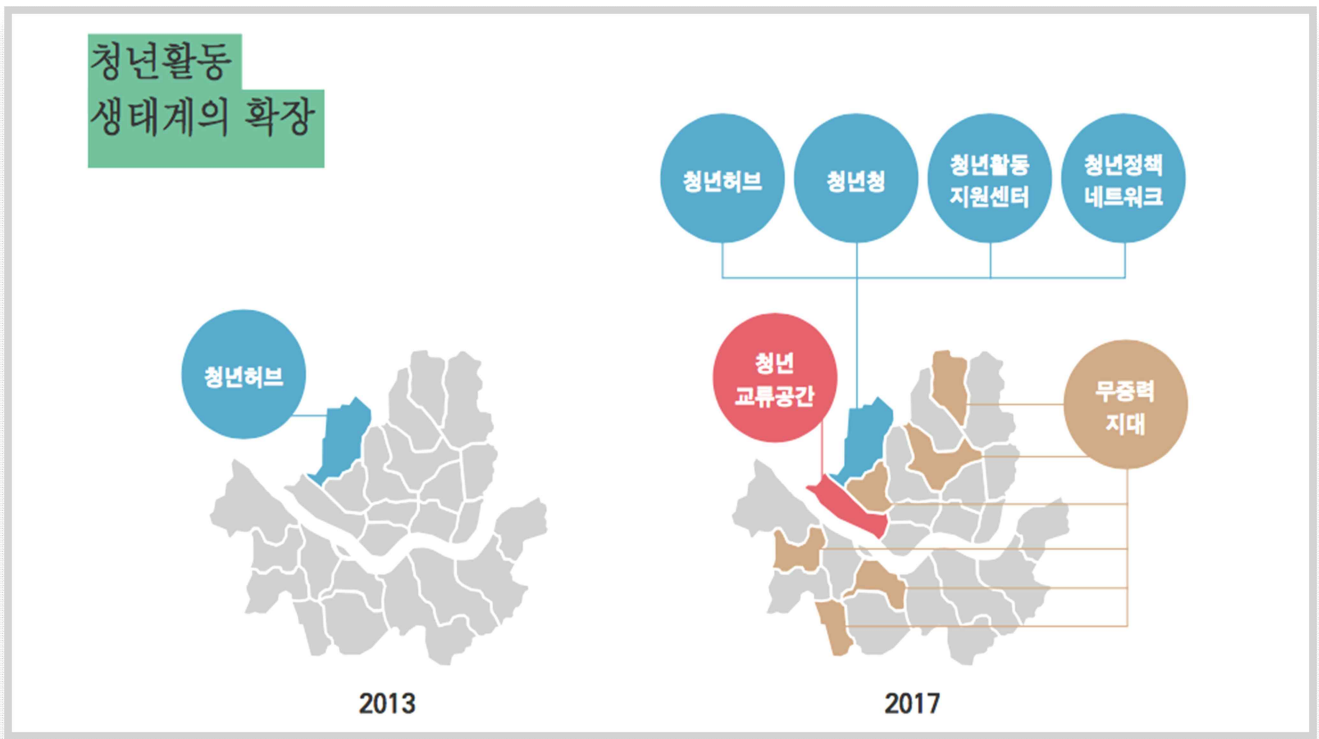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23	4	0	0 (0)	0 (0)	1 (0)			1 (0)	15 (4)	0	0	7	0 (0)	0 (0)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

□ 그간의 노력과 주요성과

■ 청년활동 생태계 확장

- 2013년 청년허브 개관 이후 실행된 청년정책 및 사업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와 활동이 대폭 증가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청년허브-청년 당사자주체 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함.
-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계획’을 기반으로 2017년 현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무중력 지대가 추가 조성되는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확장이 이뤄짐.



[청년활동 생태계 확장 지도 (2013년→2017년)]

■ 서울시 청년정책 형성 및 확산 기여

○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 2014년 서울시 청년정책 형성과정에서 청년층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정책 시민참여기구, 이하 청정넷)’를 구성 및 운영해 청년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 및 지역 확산

- 거버넌스 구축 결과 2015년 1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 시행, 2015년 서울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 수립
- 2017년 11월 기준 총 15개 시도와 50개 시·군·구에서 서울시 조례에 기반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 청년허브 개소 이후 청년지원기관이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청년허브의 대표사업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역시 다수의 기관으로 벤치마킹 되고 있음.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벤치마킹 사례

기관명	사업명
서울시 NPO지원센터	미트웨어
경기문화재단	COP 지원사업
경기도청	따북청년 3.6.9
충남시민재단	청춘작당
경기문화콘텐츠진흥원	멋프로젝트
광주청년센터 The 숲	청년모험
대구청년센터	다모디라

서울 외 지역 청년센터 개관현황

기관명	개관일
광주청년센터 The 숲	'15. 6
대구청년센터	'16. 6
수원청년센터(청년바람지대)	'16.11
청년두드림센터(부산)	'17. 8

■ 청년 커뮤니티 및 청년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활동기반 조성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00여 개의 청년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총 5,7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
 - 커뮤니티 활동 이후 개인적인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삶의 능동성(86%), 사회적 소속감(85%), 활동에 대한 책임감(93%) 제고의 효과를 창출
- 2013년부터 5년간 청년활동 및 공간 지원을 통해 300여개의 청년단체를 지원
 -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한 활동의 경험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 역량이 축적되고, 외부 자원과의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청년 활동의 확장을 도모함.
- 커뮤니티 및 활동 활성화로 인한 청년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서울시와 협력하여 생활권에 가까운 청년공간(총 17개소)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서울 내 청년활동 공간인프라를 대폭 확대함.



'14 청년기본조례안 발의



'15 청년연구 결과공유회 진행



'16 청년학교 특강 진행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19. 5. 12. 현재)

연번	처분요구 제목 (관련기관)	처분 유형	지적사항, 처분요구, 조치결과	비고
1	청년참, 청년활 지원 연령 기준 부적정 등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청년청)	주의요구 (청년허브) 주의요구, 통보 (청년청)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동(청년참, 청년활)을 지원하면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의 범위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해석됨에도 만19세~39세 청년을 지원하고, 활동지역을 서울로 제한한 자체 방침과 달리 서울 이외 지역 활동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지원과 조례 등의 규정과의 불일치 해소방안 마련 필요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관련 조례에 부합되도록 결정하고 선정 심사 시 중복 지원 여부와 지원 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단체를 선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주의) ○ (청년청)서울시청년허브에 대한 지도·점검 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 '市'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 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주의) <p>청년기본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 등 제 규정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에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 등 관련 조례와 청년활동지원사업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통보)</p>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청)현재 「청년기본법」이 국회 계류중으로, 향후 동 법령 제정과 연계하여 '20년 사업 추진 시에는 청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보완하여 추진-진행중 ※ 금년도 '청년기본법' 미제정 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업대상에 대한 기준 보완 시행(청년허브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청년청-3317호, '19. 3.21.)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지원신청서 보완, 심사단계 신설 등 중복 지원 방지 및 지원 자격점검 등 '19년 청년참 및 청년업 선정 계획에 반영(청년허브-1526호, '19. 4.25. 및 청년허브-1539호, '19. 4.26.호)-완료 	진행중
2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성장· 지속가능성 평가 강화 필요 (서울특별시청년허브)	통보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18. 7월까지 106개 단체(개인)가 청년참(청년참참참), 청년활 사업 중 1~2종의 사업을 연속 지원 받았고, 이 중 청년참(청년참참참) 사업은 971개 지원단체 중 85개 단체가 2년~4년 연속하여 지원받았으며, 청년참 또는 청년활에 참여한 8개 단체(개인)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이러한 결과는 청년참(청년참참참) 및 청년활 사업은 동일단체 	완료

			<p>연속·중복지원 제한규정이 (일부)없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이 비교적 유사하며 (지원단체)공모사업 계획서의 연도별 유사한 활동내용이나 구체성 미흡 등에 대한 청년허브의 비교적 관대한 심사에 각각 기인한 것으로 판단</p> <p>[처분요구]</p> <p>○ ‘청년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사업별 선정기준 및 성장·지속가능성 평가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p> <p>[조치결과]</p> <p>○ 감사 후속조치 방침 수립(청년허브-1522호, '19. 4.25.) 및 동일단체 연속중복지원 제한규정 신설, 연속추가지원 시 심사 강화 등 2019년 청년참·청년업 선정계획 반영(청년허브-1526호, '19. 4.25.)(청년허브-1539호, '19. 4.25.)</p>	
3	<p>「청년들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사업」 정산검토 미흡 (청년청, 서울특별시 청년허브)</p>	<p>주의요구 (청년청)</p> <p>주의요구 통보 (청년허브)</p>	<p>[지적사항]</p> <p>○ 서울특별시청년허브는 「청년들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市の 승인을 받았으므로, 당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15년~17년까지 지원단체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공모지원사업 정산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공모지침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주의 및 경고처분, 차년도 지원배제, 지원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했으나 청년활력공간 사업의 경우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사업비 집행 △지급기한 도래 전 대가 지급 △단체 내부구성원에게 지급불가한 전문가비를 내부구성원에게 지급 등의 사례가 있고, 청년활 사업은 사업추진활동비(교통비, 식비 등)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정산하지 아니한 사례 등이 확인됨.</p> <p>[처분요구]</p> <p>○ (청년청)서울시청년허브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주의)</p> <p>○ (서울특별시청년허브)위·수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제 규정을 준수하고(주의), 지원단체 및 정산관련자를 대상으로 통합 정산교육 및 정산사례집 배포 등 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통보)</p> <p>[조치결과]</p> <p>○ (청년청)2019년 지도점검 시행 시(11월 예정, 별도계획 수립) 사업추진 전반 및 예산집행에 대해 지도점검 강화(청년허브 특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청년청-3317호, '19. 3.21.)</p> <p>○ (서울특별시청년허브)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정산교육 실시, 집행 인식강화 협약실시 등 2019년 청년참 실행계획 반영(청년허브</p>	완료

			-1182호,'19. 4. 4.)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정산교육 실시, 집행 인식강화 협약실시, 세무회계교육 실시 등 2019년 청년업 실행계획 반영(청년허브-1193호,'19. 4. 5.)	
4	자산관리 미흡 및 프로그램 참여 비용 부담 징수 (서울특별시청년허브)	통보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은 지원사업의 종료 후 공공의 이용에 활용되도록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타당함에도 '16년~'17년 각 청년활력공간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자산(17품목 5,817천 원)에 대하여 청년허브에서는 청년활력공간의 사업종료 후 자산취득 목록을 제출받고 있을 뿐 사업비 지원 종료 후 활용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 청년단체에서 사업 참가자(수강생)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업료(재료비 포함) 등의 제반 비용은 예산사용계획에 포함되어 청년허브에서 사업비로 교부하고 있으므로, 제반 비용을 교부받은 청년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참가자(수강생)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일부 청년단체에서는 사업 참가자(수강생)에게 수업료(재료비 포함)를 징수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청년허브의 운영지침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임.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단체와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협약서 체결 시 공간조성 관련된 내용(예 : 사업 중단 시 공용목적으로 지속 활용 등)을 규정하는 등 조성비가 투입된 공간의 활용방안 및 청년활력공간의 자산성 물품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참가자(수강생)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단체의 경우 프로그램의 수업료(재료비 포함) 등의 재원을 지원신청서(예산활용계획)에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통보)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사용가이드에 자산 항목 제외처리(연속사용이 가능한 자산성 물품 구입불가 및 임대사용) 등 2018년 사업 결과보고 반영(청년허브-383호,'19. 2. 8.) 및 감사 후속조치 방침 수립(청년허브-1522호, '19. 4.25.) 	완료
5	N개의 청년학교 운영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N개의 청년학교를 운영하면서 市の 사전승인 없이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축소(내부결재만으로 변경)하고, 등보잡문화학교 및 국제교류학교 책임담임 등 개인 4명의 용역계약은 '16. 8. 1. 체결되었으나 계약이후에 운영계획('16. 8.19.)과 계약품의 내부결재('16. 9. 7.)가 이뤄짐. ○ '17년 N개의 청년학교의 경우 청년허브의 공공건축학교 해외연수 프로그램 계획서에는 사업대상으로 '청년 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농교류 아이টে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완료

			<p>청년 및 관련사업 관계자로 되어 있을 뿐, 참여자 선발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고, 공공건축학교와 D학교의 해외 연수 과정 참가자 총 14명 중 8명이 청년허브 직원 및 지원인력으로 구성되어 사업의 혜택이 내부 직원 및 관련사업 관계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p>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며 예산의 낭비 등이 없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업대상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주의)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매뉴얼 강화 - 개인용역계약 절차 및 한도 준수사항 등 감사 후속조치 방침 수립(청년허브-1522호, '19. 4.25.) 및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예정('19. 5~6월) 	
6	<p>2016년 세출예산의 이월 및 반납 기준 미준수 (서울특별시청년허브)</p>	주의요구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도 운영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연도 말에 일부 예산을 자체 별도 계좌에 이체하고 이를 정상 집행한 것으로 市에 정산 보고 하는 한편, 이체한 예산은 익년도 3월말 경까지 집행함.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예산·회계 관련 제 규정을 준수(주의)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련자 1명 신분상 조치(주의)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예정('19. 5~6월) 및 해당 직원 신분상 조치 완료. 	완료
7	<p>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p>	주의요구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선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분리 발주하였으며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 완성하지 아니한 계약 건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청구 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에 소홀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선금을 지급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임에도 분리하여 발주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주의) ※ 관련자 2명 신분상 조치(주의)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매뉴얼 강화 - 조항준수, 통합발주, 지연배상금 및 변경계약서 등 원칙 재확인 등 감사 후속조치 방침 수립(청년허브-1522호, '19. 4.25.) 및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 예정('19. 5월), 해당직원 신분상 조치 완료. 	완료

8	인건비 예산편성 및 연봉계약 운영 부적정 (청년청,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주의요구 (청년청) 주의요구 (청년허브)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에서는 시설예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의 차기년도 예산편성 일정 및 기본운용 방향을 제시 하여야 함에도 시달하지 않았으며, 청년허브 자체적으로 인건비 운영(안)을 만들어 市 주무부서에 승인요청을 하고 계약심사과정 후 인건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집행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서는 '16년 연봉 계약시 768,351천 원 범위 내에서 연봉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직원 20명에 대한 총 연봉 계약액은 785,017천 원으로 16,666천 원을 초과하여 계약 ○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연봉제규정 제9조(연봉의 계산) 제3항에 의하면 최초 산정된 기본연봉은 [별표2]의 기본연봉 지급기준표에 따라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연봉채정 가능액'이 지급별로 적용된다는 의미인지, 적용연수별로 적용된다는 것인지 모호하고, 연봉제 운영에 있어 직급을 1~6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기준표의 PM급, 팀장급이 몇급 상당을 의미하는지 구분이 모호함. 또한 연봉제규정 제9조 제4항은 매년 말 근무평가에 따라 연봉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청년허브는 매년 소속 근로자의 연봉 재계약 시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청)차기년도 예산편성기준(안)을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 시달하고, 인건비 운영이 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주의)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연봉제를 운영함에 있어 市에서 시달한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연봉계약 운영 부적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연봉 지급기준표 등 연봉제 규정을 정비하며, 연봉제규정에 따라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연봉계약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주의)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청)예산편성 전 예산편성기준(안)을 서울시 청년허브에 시달하고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청년허브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청년청-3317호, '19. 3.21.) ○ (서울특별시청년허브)기본연봉지급 기준표 등 운영규정 개정 등 운영규정 보완 계획 수립(청년허브-1522호, '19. 4.25.) 및 연봉계약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관련규정 재정비 및 근무평가 실시('19. 1. 3.)-진행중 	진행중
---	--	-------------------------------------	--	-----

9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서는 '18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 등급별 인원을 결정하면서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직원 25명을 개인별 평가 후 직급별이 아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로 결정. 즉, 청년허브의 6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11명으로 당초 S:A:B=2:5:4비율이 되어야 하는데 S:A:B=0:4:7로 하는 등 '15년, '16년, '18년 각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자체 수립 계획과 상이하게 지급인원을 결정하여 전체적으로 하위직급(5급·6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 자체에서 수립한 지급계획에 부합하게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주의)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보완 및 실행(청년허브-611호, '19. 2.22.) 	완료
10	세출예산 운용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또한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에는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서울특별시청년 허브에서는 '13년~'18. 7월까지 발생한 이자수입 및 카드사용 포인트 등 잡수입 총 10,489,625원을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예치 보관하면서 그 중 총 3,857,365원을 운영사업비의 일부로 지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는 일반운영비(공공 운영비)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청년허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직원상담 치유과정(청년허브 조직 내 직원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함)'과 관련한 경비 4,500천 원을 일반운영비가 아닌 목적사업비(청년활동가 교육비)에서 집행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예산·회계 관련 제 규정을 준수(주의)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지적사항 관련 해당직원 교육진행('19. 7월) 예정(청년허브-1522호, '19. 4.25.) 	완료

11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서는 '14년부터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를 사업비정산 시 서울시에 반환하지 않았으며, '17년 10월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를 현금 2,700천 원으로 전환하여 직원명절선물 구입비로 2,183천 원을 사용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 등을 실시(주의)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매뉴얼 강화 등 감사 후속조치 방침 수립(청년허브-1522호, '19. 4.25.),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 예정('19. 7월) 	완료
12	자문비용 사용 부적정 (청년청, 서울특별시청년허브)	<p>통보 (청년청)</p> <p>주의요구 (청년허브)</p>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다른 시설과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센터 간 회의나 법인의 감사 진행비에 사용하였으며 출장 시 택시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총11건을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 ○ 사업명(목적포함), 계약금액(예산의 내용일치)등이 포함된 계약품의(내부의 의사결정)가 완료된 후 계약하고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이 완료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계약품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15.12.18. 회계 및 세무 자문 용역에 따른 비용 2,100천 원을 회계사무소에 지급하고, '16년도에는 계약품의 및 지출원인행위(계약서 작성) 없이 법무사에게 매월 220천 원을 지급하여 총 2,640천원의 자문비용을 지출함. 또한 노무자문 계약품의('16. 8. 2.) 전에 계약서를 작성('16. 7.20.)하여 매월 231천원을 노무사무소에 지급하기로 하고 7 월분의 비용을 지급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청)청년허브의 예산집행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강화(통보) ○ (서울특별시청년허브)관련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자문비용이 적합한 사용절차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주의)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청)2019년 지도점검 시행 시(11월 예정, 별도계획 수립) 사업추진 전반 및 예산집행에 대해 지도점검 강화(청년허브 특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청년청-3317호, '19. 3.21.) ○ (서울특별시청년허브)계약 매뉴얼 강화 - 계약품의 원칙 재확인 등 감사 후속조치 방침 수립(청년허브-1522호, '19. 4.25.) 및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 예정('19. 7월) 	완료

<p>13</p>	<p>입주단체 점유 건물 면적 산정 부적정 (청년청 건물) (청년청)</p>	<p>시정요구</p>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건물대부료 산출을 위한 건물면적은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舊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청 건물(공유재산) 자립실험실 사용계약에 앞서 '18. 4월 입주단체 사용료 산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층 단체의 경우 민간에서 통용되는 주상복합건물 사용료 부과 예를 준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 되어 이를 바탕으로 단체별 공용면적을 산정함으로써 공용면적에서 합계 133.48㎡ 과소 측정된 것으로 확인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향후 청년청의 입주단체별 건물면적(입주면적)을 다시 산정(시정)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청)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입주단체별 건물면적(입주면적)을 재산정(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사용료 산정 및 부과계획, 청년청-2591호, '19. 3. 7.) 	<p>완료</p>
<p>14</p>	<p>물품구매 및 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p>	<p>주의요구 통보</p>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구입 시 예산을 편성하여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물품 구입의 내부결재를 득해야 하며,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서는 '16.11월 물품구입에 대한 내부결재 없이 근무상황부 시스템을 구매하고, 이에 소요되는 물품대금 12,000천 원은 사업비(청년정책 홍보 및 아카이빙) 예산에서 무단 전용하였으며 '13년에 구입하여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 및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15년~'17년까지 노트북 12대를 구입하였고, 내용연수가 남아 있고 사용이 가능한 구형 노트북 25대 및 컴퓨터 5대를 미활용 하고 창고에 방치 ○ 수기로 물품코드 및 취득일자 등을 작성하여 물품에 부착하였으나 관리대장과 물품코드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고, '15년에 구입한 난방기 등 6개 물품은 분실되었으나 관리대장에는 사용 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물품관리가 부실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 구입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주의),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통보)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재물조사 예정(정기재물조사 및 자산관리프로그램 도입운영 계획 수립 청년허브-1033호, '19. 3.25.) 및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 예정('19. 5. 2.~5.24.) 	<p>완료</p>

15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의 ‘개방형 채용계획(’17. 1.20.)’에 따른 공고에서는 합격기준으로 필기+면접 총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최저점수 60점 미만은 탈락하는 것으로 함. 그러나 ‘개방형 채용계획’에 ‘경영실 - 행정지원 기반조성 분야’ 채용예정인원이 3명이었는데도 1명만 합격 처리하면서, 필기+면접 합계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2순위자, 3순위자를 불합격 처리하였음. ○ 또한, ‘직원 채용계획(’18. 3. 2. 채용예정인원 4명)’에 따른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채용인원의 2~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공공플랫폼팀의 경우 채용예정(1명) 4배수인 4순위까지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나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무진”에 대해 평가한 심사위원 A와 D의 점수가 잘못 이기되었고, 이에 따라 원래 공동 3순위로 서류심사에 합격했어야 하는 “무진”이 5순위로 불합격하는 상황이 초래됨.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채용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과 공고내용에 부합하게 처리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주의) ※ 관련자 1명 신분상 조치(주의)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 예정(채용 및 성과평가 관련 ‘19. 8월~10월), 해당직원 신분상 조치 완료. 	완료
16	자율근무제 시행에 따른 복무관리 미흡 (서울특별시청년허브)	통보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청년허브가 서울혁신과크유니온 청년허브지부와 맺은 단체 협약서 제8조에서는 ‘센터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14시부터 조합원 및 직원이 근무지를 자율적으로 이동해서 근무하는 자율근무제(재택근무 포함)를 실시하고, 이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방법으로는 자율근무 하루 전 16시까지 ‘자율근무 신청 및 근무계획서’ 양식에 의거 자율근무를 신청하고 자율근무일 14시 퇴근 시 퇴근카드를 태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자율근무 신청서에는 근무장소를 기재하는 부분이 없고 근무 후에는 복무관리에 필요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지 아니하는 등 복무관리가 부실.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근무 신청 및 근무계획서’ 상에 근무 장소를 포함하고 근무 후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자율근무에 따른 복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통보)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지적사항 관련 자율근무에 따른 복무관리 규정 개정(청년허브-1032호, ’19. 3.25.) 	완료

7. 도로포장 및 시설물 안전감사 (p.477)

감사배경 및 목적

- 도로(보·차도)포장 등의 시공 및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를 통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과 도로의 사용성을 증진코자 함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안전총괄실(舊.보도환경개선과¹⁾, 도로관리과, 동부도로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사업소, 서대문구청, 동작구청
- 감사기간 : 2018. 7. 18. ~ 10. 5. (기간 중 25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외 4명
- 감사범위 : 2015. 1. 1.부터 처리한 도로 포장 관련 공사·용역·물품구매 업무 전체

감사중점

- 차도 및 보도 포장공사의 정밀시공과 품질관리의 적정여부
-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체계와 공사이행의 적정여부
-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 여부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²⁾	신분상 조치인원 ³⁾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34	20	18,427		1 (1)	4 (18,427)	2 (18,427)		2	9 (19)	2		18		

1) 2018. 1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2018.12.31. 개정)에 따라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변경으로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로 변경됨

2) 총 건수는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조치한 총 건수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01	배합 부적정, 아스팔트 혼합물 납품·시공(6p)	통보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아스팔트 (AP)함량 부족 및 과다하게 배합·납품, 시공된 원인을 규명하고 기준미달정도 등을 감안 재시공 등 조치 -검수 소홀 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 -야간 특별기동점검 등 대책 강구	-원인규명 등을 위한 TF팀 구성('19.1.29.)하여 재시공 등 조치방안 마련 중 -'19.4.2. 벌점부과 통보	일부완료 (이행중)
02	부적품 관급자재(아스팔트혼합물) 납품·시공 (14p)	통보	-부적품(골재의 규격미달 등) 아스팔트혼합물 납품자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 조치요구(조달청장) -부적품 아스팔트혼합물 납품·시공에 대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등 조치	-'19.5.16. 조달청에 납품자 제재(확인) 요구 -조달청(관련내용 확인중) 처리결과에 따라 재시공 등 조치예정	이행중
03	소성변형 발생에 따른 특정구간 공용성 등급 적용 기준 마련 필요(20p)	시정요구 통보	-기후변화 등 소성변형 발생원인 별 구간별 공용성등급 세부 적용 기준마련 검토 -소성변형 발생원인 등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시공	-소성변형 등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TF팀 구성 ('19.1.29.)하여 세부적용 기준 마련 검토중 -전문가 자문 등 결과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하자조치 예정	이행중
04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품 적용 부적정(27p)	개선요구 통보	-“동작구청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적용 세부기준 제시 및 단가가 조정되도록 “동작구청 설계기준” 개선 -자치구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에 대한 설계대가를 서울표준품셈에 반영방안 검토	-2019년도 동작구 설계기준에 반영 시행함 -계약심사 강화 자체교육 자치구 실무교육 실시	완료
05	보도정비공사 투수기층 미시공 및 준공정산 부적정(32p)	시정요구 통보	-보도정비공사에서 투수기층을 공사감독자가 임의 변경하여 혼합기층으로 시공함(관련공무원 신분상 조치) -건설중기유도원 인건비를 현장근로자 노무비로 지급 하고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6,774천원)하여 중복 지급하여 회수 -품질시험 미실시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주의	-'19.3.14. 6,774천원 납부 통보(진행중) -현장대리인 “주의” 조치 -직원교육 및 지도감독업무 철저 지시 -관련공무원 신분상 조치 진행중	일부완료 (이행중)

3) 조치인원은 징계, 주의, 고발과 관련된 인원을 말함

06	보도정비공사 자재구매 및 포장기층 시공 부적정 (40p)	시정요구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내용과 다르게 불투수 포장으로 변경 발주하고 이후 불투수 기층에 부적합한 고가의 투수블록으로 변경 시공 -공사구간 3개소에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소형고압블록 조각 및 100mm 골재 등 부적합 자재로 시공하고 부적포 및 기층을 미시공하여 부실시공된 구간은 보완 재시공 -시공사 벌점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29. 재시공 완료 -직원교육 및 지도 감독업무 철저히 지시 -'19.5.9. 부실벌점 부과 	완료
07	보도블럭의 미끄럼저항기준 미달자재 사용 등(45p)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정비공사 사용블록은 미끄럼저항기준의 품질시험값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투수기층 골재 품질확인에 관한 자재공급원 승인절차, 품질시험 실시 -관련자 교육 등 감독업무 철저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 '찾아가는 보도교육'(서울시)을 통해 직원교육 실시 -직원교육 및 지도감독업무 철저히 지시 	완료
08	도막형바닥재 구매·설치 부적정(53p)	주의요구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막형바닥재가 차도에 설치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지도·감독업무 철저히 -전 사업소와 자치구에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차도에 설치토록 통보 -도막형바닥재의 측구 사용가능여부와 시공상 문제점 및 안전성을 검토 확인하여 전 자치구 및 사업소에 조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사업소 및 자치구에 관련규정 준수 통보 -'19.3.6. 전 자치구 및 사업소에 측구적용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사용제한 통보 	완료
09	노후탄성포장 설치비의 검사 부적정 및 과다계상(62p)	시정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내역서의 재료비(코르크 포설 및 다짐) 11,647천원이 중복 계상되어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4. 환수금(11,647천원) 납부 -'19.3.19. 직원교육실시 	완료
10	노후 탄성포장정비공사 시공·검측 부적정(65p)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리아스콘 절삭 두께를 미달되게 절삭하여 재시공 -시공사(현장대리인) 주의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8.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주의조치 통보 	완료
11	맨홀정비공사 신기술활용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미반영 발주 등(68p)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한 시방서를 계약문서에 포함하고 -완성된 목적물의 품질시험 실시, 신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직접 체결하여 공사 시행토록 직원 교육, 지도·감독업무 철저히 -품질시험 미실시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에게 주의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공사완료 후 품질시험 실시 및 직원교육 실시 -건설기술자 주의 조치함 	완료

12	맨홀정비공사 발주 시행 관련 지도·감독업무 소홀 (73p)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사업소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계약문서에 포함하고 -불량맨홀 정비공사에서 맨홀 품질시험 실시, 맨홀정비 실적 등 시스템 입력, 상태평가 기준 숙지 등 부실하게 품질·시공관리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지도·감독업무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포함한 맨홀정비 신기술공법별 특별시방서 배부 및 적용토록 통보 (각 사업소,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재난대응과, 서울시설공단) 	완료
13	도로포장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78p)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설계·시행 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승인절차 이행,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품질관리비의 공사비 반영·설계 및 발주토록 하여 부실한 품질·시공관리가 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설계·감독자 교육 및 지도·감독업무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12.12., '19.3.20. 품질관리(시험)계획 승인 처리 등에 대해 직원교육 실시 -직원교육 및 지도감독업무 철저 지시 	완료
14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하자관리 부적정(82p)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자발생사항 전수조사, 하자보수계획 수립·제출, 보수계획(공법) 적정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공사 이행 통지하여 재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 등에 교육 실시, 지도·감독업무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12.3. 시공자로부터 하자보수계획 수립·제출 받아 승인 -'18.12.12., '19.3.20. 품질관리(시험)계획 승인 처리 등 직원교육 실시 	완료
15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규칙」 개정 필요(85p)	통보 개선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에 도로굴착·복구관리시스템 확인, 허가및준공 검토기한 등 경과·지연처리되지 않도록 교육 실시하고 지도·관리업무 철저 -도로굴착·복구 관련 자치구 위임사무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개정 추진 -'19.3.21.~4.10. 입법 예고 	완료
16	교면포장공사 하자관리 업무소홀(90p)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동3교 보수공사의 하자발생사항 전수조사, 발생원인 등 하자보수계획 수립·제출, 보수계획(공법)의 적정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조치 및 직원 교육과 지도·감독업무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10.12. 시공자로부터 하자보수계획 수립·제출 받아 전수점검 실시 -'18.12.13. 하자보수공사 완료 -'19.3.20. 직원교육 실시 	완료

□ 현지 조치사항 일람표

연번	처분요구 제목	건 명	조치사항	비고
01	보행데크 시공(중단선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데크를 설치하면서 중단선형을 총 17개소에서 총 14개소로 축소 시공하여 부분 중단경사도를 최소11.2%에서 최대 약 39%로 임의 변경하여 설치 -서울시 공공재생과와 협의하여 재시공 내지 설계 변경(현재의 중단선형 준치) 등을 결정 -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재생과 협의('19.3.22.) 및 현장점검 실시후 준공합·기 시공되어 준치 결정 -'19.3.19. 직원교육 실시 	완료
02	포장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 공사의 현장대리인 변경 시 해당 직무 분야 및 시공관리업무가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발주자는 별도 검토 및 확인조치 없이 공문만 접수한 상태로 준공처리함 -향후 공사 시행 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 배치 및 발주자 확인절차를 철저히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19. 직원교육 실시 	완료
03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연세로 2마길 33앞 열선설치 및 도로정비 공사”에 발생한 하자 사항은 전수조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보수공법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하자보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수조사 실시, '18.11. 보수방법 검토 등 보수조치 완료 -직원교육 및 지도감독업무 철저 지시 	완료

8. 사면정비 및 조경분야 유지관리실태 감사 결과 (p.569)

감사배경 및 목적

- 산지사면 및 조경(공원·녹지) 분야에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설계,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사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

추진내용

- 감사대상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관악구, 도봉구, 종로구
 - ▶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분야 금액(건수)로 표본 선정
- 감사기간 : 2018. 11. 12.~12. 19.(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3팀장 외 4명
- 감사범위 : '16년 1. 1.부터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감사중점

- 설계 및 계약, 특정제품 선정·사용 과정의 적정성
- 시공 및 사후 하자점검 등 시공품질의 적정성
- 공사준공 및 정산과정에서의 예산낭비 사례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정 (환수)	감 액	기 타 (재시공)					
12	20	37,746	0	0	7	2	0	5	5	0	0	0	0
			(0)	(0)	(37,746)	(37,746)	(0)	(0)	(20)				(0)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19.6월 기준)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	연변관 앞 분수대 보수공사 시공 및 하자관리 부적정	시정 요구 통보	-청와대 앞 분수대의 보수 및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방수층 등에 균열, 백태 등 발생	-하자사항에 대해 보수조치 -관련 기술자 행정처분 조치	이행중
2	산책로(데크로드) 기초구조물 시공 및 정산 부적정	시정 요구 통보	-산책로를 구성하는 기초, 난간 등을 설계도서 대비 부족하게 시공한 채 정산하여 안전성 우려 및 예산낭비 초래	-안전성 검토 후 보완시공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관련 기술자 행정처분 조치	이행중
3	공원 내 투수블록 포장설계 부적정	시정 요구 통보	-공원 내 보행로 투수블록포장을 설계기준과 다르게 설계, 시공하여 투수효과저하로 물고임 및 침하 등 발생	-침하된 보도 보완시공 조치 -관련 기술자 행정처분 조치	이행중
4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주의 요구 통보	-건설기술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이탈한 채 시공업체 소속의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행함	-현장대리인에게 과태료 부과	완료
5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주의 요구	-목재의 가공정도가 적은 통나무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구조의 품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중등구조로 과다 설계하여 예산낭비 초래	-관련자 신분상 처분	이행중
6 ~7	특정제품(고강도네트)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이행	주의 요구	-일정가격 이상의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했는데도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제품 선정 과정에 특혜소지 우려	-관련자 신분상 처분	이행중
8	낙석방지망 시공 부적정	시정 요구 통보	-낙석방지망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안전사고 우려	-낙석방지망 재시공 조치	이행중
9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시정 요구	-수목의 뿌리분을 검은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채 식재	-결속재료 제거 후 식재조치	이행중
10	실외 테니스장 바닥 포장 시공 및 공사감독 부적정	시정 주의 요구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바닥을 부적정하게 시공하여 물고임발생	-테니스장 바닥 재시공조치	이행중
11	공사비(사급자재 인력 소운반비) 정산 부적정	시정 요구	-사방사업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 불필요한 소운반비를 공사비에 반영하여 예산낭비 초래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조치	이행중
12	동네 뒷산 공원시설물 시공 부적정	주의 요구 통보	-설계도서와 다르게 옹벽 등을 부족하게 시공하였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예산낭비 우려	-관련자 신분상 조치	이행중

9. 2018년 제2차 건설하도급분야 감사결과 (p.618)

감사배경 및 목적

- 건설 공사장의 하도급 감사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업체간상 생협력, 사회적 약자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

추진내용

- 감사대상 : 2개 기관(7개소 건설공사장)

발 주 처	담 당 부 서	대 상 공 사 장
구로구청	가부서	구로구 ○○○○○○○○ 신축공사 구로 ◎◎◎ ◎◎◎ 신축공사
서초구청	나부서	◇◇◇ ◇◇ 및 ◇◇ 공사 ◆◆◆◆◆◆◆◆◆◆~◆◆◆◆◆◆◆◆◆◆ 보수보강공사 □□□□□□□□□□ □□□□ 보수공사 △△△△△△△ △△△ △△△ △△△△ 보수공사 ☆☆☆☆☆☆☆☆☆☆ ☆☆ ☆☆☆☆ 보수공사

- 감사기간 : 2018. 11. 26. ~ 12. 7.(10일간)
- 감사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외 3명
- 감사범위 : 건설하도급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중점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및 하도급 분야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
- 건설기계 임대차 및 건설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여부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 계 (인원)	시정(금액)				주 의 (인원)	개 선	권 고	통 보	고 발 (인원)	모 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정 (회수)	감 액	기 타						
30	6	0	0 (0)	0 (0)	0 (0)	0 (0)	0 (0)	10 (6)	0	0	20	0 (0)	0 (0)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19.6.14.현재)

연번	공사현장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자격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수급인 및 하수급인 행정처분 등 의뢰	조치완료
2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통보 주의요구	○ 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조치완료
3	구로구 ○○○○ ○○○○ 신축공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거짓 통보	통보 주의요구	○ 하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조치완료
4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하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조치완료
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통보 주의요구	○ 하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조치완료
6	구로 ○○○○ ○○○○ 신축공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하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조치완료
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통보 주의요구	○ 하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조치완료
8	□□□□□□ □□□□ □□ □□ 보수공사 외 3개소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협약 및 품질관리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수급인 및 건설기술자 별점부과 조치중	조치중
9	◆◆◆◆◆◆~ ◆◆◆◆◆◆◆◆ ◆◆◆◆◆◆◆◆ ◆보수보강공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하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조치완료
10	◇◇◇◇ ◇◇ 및 ◇◇공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통보 주의요구	○ 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조치완료
11	□□□□□□ □□□□ □□ □□ 보수공사 외 4개소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 지연통보 및 발주자 지연확인	통보	○ (하)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조치완료

10. 2019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결과보고 (p.645)

□ 점검배경 및 목적

-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점검

□ 추진내용

- 점검대상 : 우리시 소속 기관이 발주한 13개 건설공사 현장

발 주 처	건수	대상 공사현장
계	13	진행 중인 13개 공사현장
도시개발시설본부	7	▽▽▽▽▽ 구조개선공사 등 7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	3	㉸㉸㉸㉸ ㉸㉸㉸㉸ 건설공사 등 3개소
서울교통공사	1	▲▲▲ ▲▲▲▲▲ ▲▲보강공사(⊙공구)
북부도로사업소	1	☆☆☆ ☆☆개선공사
중량물재생센터	1	중량물재생센터 ◆◆◆ ◆◆◆◆ 설치공사

- 점검기간 : 2019. 1. 22.~ 1. 30.(기간 중 7일간)
- 감사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외 6명
- 감사범위 :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사항

□ 감사중점

- 근로자 노임 및 하도급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면계약서 작성실태
- 명예하도급 호민관 활동(법률, 노무, 안전, 체불예방 및 홍보) 등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433	-	-	0	0	0	0	0	0	-	0	0	0	0	433

□ 총 평

■ 2019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근로자의 노임,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13개 공사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 대부분 현장은 하도급 관리, 건설기계 투입, 노무관리 등 분야별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현장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노무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지급기일을 4일에서 최장 16일까지 지연 지급하였으며,
-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임금항목, 지급시기 등) 누락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음.

■ 향후, 서울시 공사현장의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지정토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기관(발주부서)에 통보.

□ 점검결과 처분요구 내역

연번	발주부서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나부, 다부) 중량물재생센터 (가과) 서울교통공사 (가사업소)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나부, 다부)	장비대금 체불 및 1월분 기성금 미지급	현지조치 (14건)	체불대금 지급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2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3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3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현지조치 (18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현지조치 (2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5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현지조치 (6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6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10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7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35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지조치 (1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9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122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10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	현지조치 (46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연번	발주부서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1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61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12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건설기계약대차 직불합의서 서명 누락	현지조치 (1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13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서명누락	현지조치 (1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14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건설기계약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지조치 (24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15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건설기계약대차 직불합의서 서명 누락	현지조치 (2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16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서명누락	현지조치 (3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17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설정	현지조치 (4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18	중랑물재생센터 (가과)	건설기계약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지조치 (11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19	중랑물재생센터 (가과)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현지조치 (11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20	서울교통공사 (가사업소)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	현지조치 (23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21	북부도로사업소 (가과)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34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
22	북부도로사업소 (가과)	물량증가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현지조치 (1건)	관련자 교육실시	완료